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7
----------	------

발의연월일 : 2009. 10. 14.

발 의 자 : 칠헌의원 외 4인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4. 1)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 내용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을 정함.(안 제5조)

나. 의원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경남도 정책기획관 - 4140호(2009. 4. 27)

4. 본 문 : 붙임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일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윤리심사 등) <u>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u></p> <p>제5조(겸직신고) ①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u></p> <p>② <u>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 <u>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u>의원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일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u></p> <p>제7조(시행규칙) <u>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별지 제1호 서식)

고성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의회의원

(인)

고성군의회의장 귀하

